



인천광역시



수신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귀하
(경유)

제목 「물환경보전법」 개정 관련 사항 안내

1. 물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2019.10.17.)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총유기탄소량(TOC)
 나.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 확대: 폐수배출시설 중 35개 업종 → 전 업종
 ※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변경신고 제외
 (단, 폐수위탁처리 사업장은 변경신고 대상)
2. 이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COD'로 신고 되어 있는 사업장(2019년 이전 신고 사업장)에서는 'TOC'로 2021. 12. 31.까지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생태독성이 배출되는 사업장 또한 오염물질(생태독성) 추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3. 변경신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 대상이오니 신고 불이행으로 처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인천광역시장



주무관	성지연	산업단지환경 담당	박승일	대기보전과장	전결 2021. 9. 28. 리덕균
협조자					
시행	대기보전과-21942	(2021. 9. 28.)	접수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 http://incheon.go.kr			
전화번호	032-440-3428	팩스번호	032-440-8748	/ sjy0220@korea.kr	/ 대국민 공개

인천시가 과잉대응하면 시민은 더 안전합니다!